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19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 명칭 :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변경	도로	소로	3	1	4	4	218	-	218	-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도로	소로	3	2	4	4	122	-	122	-	"
변경	도로	소로	3	3	4	4	8	-	8	-	"

2. 사업의 근거

- 2017. 12. 18. :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고시 (서구고시 2017-168호)
- 2019. 10. 21. :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구고시 제2019-194호)
- 2020. 09. 21.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구고시 제2020-162호)
- 2021. 03. 08.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구고시 제2021-39호)
- 2022. 01. 10.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구고시 제2022-2호)
- 2024. 01. 15.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구고시 제2024-96호)

3.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번	구분	보상대상 현황			소유자	주소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1	지장물	원창동 343-24	건물	컨테이너 A=13.0m ²	김*석	인천 서구 면개포로 **번길 *(석남동)
2	지장물	원창동 353-21	건물	컨테이너 A=17.0m ²	김*태	인천 서구 세어로 **(원창동)
3	지장물	원창동 353-21	건물	컨테이너 A=15.0m ²	김*태	인천 서구 세어로 **(원창동)
4	지장물	원창동 342-18	비닐하우스	철제기둥 A=42.0m ²	김*자	인천 서구 원창로 ***-(가정동)
					이*미	인천 서구 길주로 ***번길 **-(석남동)
					박*분	인천 부평구 부흥로 ***, ***동 ****호(부평동,**아파트)
					박*소	인천 서구 원창로 ***-*(가정동)
5	지장물	원창동 342-3	수도시설	수도함포함 (관넬)	김*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산꽃마을길 ***-**
					김*상	인천 서구 가정로***번길 ***-(석남동)
					김*민	인천 미추홀구 송학길 **번길 **-*, *층(주안동)

4.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24. 4. 12. ~ 2024. 5. 3. (15일 이상)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 (☎032-560-4482)

- 이의신청 방법 :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4.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 협의를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상금 산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032-560-4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